

이슈브리프 876호
(2026. 8. 3)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협정 체결의 의미 및 시사점

제876호

이성훈 abcd0159@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7월 22일 미-사우디간에 체결된 원자력 협정은 사우디의 자체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 않되, 2년간의 공동 타당성 검토 후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미국이 핵심 기술을 블랙박스 방식으로 관리하며 현지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구조이다. IAEA 추가의정서를 채택하지 않은 사우디에 대해 미국이 별도 양자 안전조치와 추가 검증을 병행하는 보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국제 비확산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라기보다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설계로 평가된다.

미국의 전략적 동기로는 중국·러시아 등 경쟁국의 사우디 원전 시장 진입을 견제하고, 중동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미국 원전 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정은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자력 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도 크다. 반면 사우디는 Vision 2030에 따라 에너지 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 원자력 산업과 핵연료주기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동전 이후 지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단순한 에너지 협력이라기보다, 안보와 산업이 결합된 전략적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적이다. 이번 사례는 미국이 고수해 왔던 비확산 정책을 고정 원칙이 아니라 전략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보장하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의회와 비확산 진영이 한국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제도적 신뢰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사우디 사례를 단순 모방하기보다, 비확산 신뢰성을 법·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민수용 핵연료주기 협상은 단계적·관리형 접근으로 추진하며, 핵추진잠수함 논의는 민간 원자력과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미 투자, 공급망 협력, 산업 기여를 결합해 원자력 협상을 보다 넓은 동맹 전략 속에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원자력 협정, 핵연료 농축, 양자 안전조치, 원전산업, 핵추진잠수함

2026년 7월 22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자력 협력 협정문서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이 1974년 인도의 평화적 핵실험 이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비확산 정책상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엄격히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우디 협정은 기존 비확산 운용 원칙이 예외적으로 조정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사우디가 아직 상업용 원전 운영 경험이 없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26기의 가동 원전을 보유한 한국과의 비교에서도 미국 비확산 정책의 일률적 적용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차등적 운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브리프는 사우디 원자력 협정의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국제 비확산 질서, 미국의 중동 전략, 그리고 특히 한국 원자력 외교에 어떠한 함의를 던지는지를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사우디 원자력 협정 체결 내용 및 국제 반응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5월 23일 서명한 행정명령 14299호¹⁾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사례로 다음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이 협정에서 양측은 2년간의 공동 타당성 검토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측은 사우디 영토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의 사업성을 2년간 검토하며,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우디에 건설하되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 방식으로 관리해 사우디 측에 이전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²⁾

1) 이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첨단 원자로 기술 배치(Deploying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ies for National Security)」 명칭으로 △120대 의회 종료 시점까지 최소 20건의 신규 123협정 추진, △향후 10년 내 만료 예정인 기존 협정의 적극적 재협상, △첨단 원자로와 소형모듈 원자로(SMR)를 포함한 미국 원자력 기술의 수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Atlantic Council, "Experts react: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the new U.S.-Saudi nuclear agreement," July 22, 2026,

둘째는 양자 안전조치 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사우디는 IAEA 추가 의정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별도 양자 안전조치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의회 제출용 면제 보고서에서 농축·전환·연료 제조·재처리 등 확산에 특히 민감한 분야에 추가적인 사찰·검증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체계는 IAEA 추가의정서 자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IAEA의 관여 하 별도의 추가 검증 조치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³⁾

셋째, 기술 통제 및 시장 접근 구조이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은 사우디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력 지위를 갖게 되며, 사우디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원자로와 관련 핵기술·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협정 자체가 특정 기업의 독점 공급권이나 최종 수주를 확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⁴⁾

넷째, 법률상 면제 조치와 의회 검토 절차이다. 미 행정부는 사우디가 IAEA 추가의정서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2020 국방수권법(P.L. 116-92)’ 제1264조에 따른 NPAS 제출 제한에 대해 면제 조치를 활용했다. 여기서 NPAS(Nuclear Proliferation Assessment Statement)는 미 행정부가 123협정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함께 내는 핵확산 평가서를 뜻한다. 이는 미 원자력법 제123조 자체의 비확산 요건을 직접 면제한 것이라기보다, 협정 제출을 가능하게 한 별도의 법률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한편 해당 협정은 제123조 자체의 요건 면제가 없는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experts-react-reading-between-the-lines-of-the-new-us-saudi-nuclear-agreement/>

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rospects for U.S.-Saudi Nuclear Energy Cooperation, IF10799, updated May 26, 2026,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IF/PDF/IF10799/IF10799.28.pdf

4)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SIPA, “What a Potential U.S.- Saudi Arabia Nuclear Agreement Could Mean,” <https://www.energypolicy.columbia.edu/>

경우 의회에 제출되며, 의회는 총 90일의 연속 회기일 동안 이를 검토한다. 이 경우 의회가 반대 결의를 채택하더라도 그 결의가 법률로 확정되려면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는 양원 각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필요하므로, 의회 반대만으로 협정의 발효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⁵⁾

이번 협정이 발표되자 미국의 비확산 원칙을 약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의회와 비확산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IAEA 추가의정서 대신 IAEA의 관여 아래 별도의 양자 안전조치 체계를 택한 방식은 국제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고, 다른 국가들에도 유사한 예외를 요구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의 잠재적 농축 역량은 중동 지역의 핵기술 경쟁과 미국의 지역 안보관리 부담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협정이 러시아·중국의 사우디 원전 시장 진입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⁶⁾

미국-사우디의 전략적 동기 및 향후 전망

이번 협정은 미국의 복합적 전략 목표가 반영된 결과로, 첫째, 중국·러시아와의 원전 수출 경쟁 및 중동 핵질서 관리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우디는 협상 과정에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대체 협력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사우디의 농축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경우 사우디가 중·러의 원전 및 핵연료주기 공급망으로 기울면서 미국의 시장 기회와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의 농축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rospects for U.S.-Saudi Nuclear Energy Cooperation, IF10799, updated May 26, 2026,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IF/PDF/IF10799/IF10799.28.pdf

6) Kelsey Davenport, "U.S.-Saudi Deal Said to Loosen Nonproliferation Vows," *Arms Control Today*, (March 2026)

보다, 미국의 통제와 기술 관리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절충적 접근을 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행정명령 14299가 120대 의회 종료 시점까지 최소 20건의 신규 123협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 기조와도 맞닿아 있으며, 사우디 협정은 그러한 대외 원자력 수출 전략을 보여주는 초기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안보적 측면에서 이번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중동 전략과 직결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란 변수와 사우디의 지역적 위상 강화가 맞물린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우디의 농축 가능성 유지는 경제적 요구를 넘어 안보적 자산이자 전략적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 미국이 이를 수용한 배경에는 이란 핵 위협에 대한 우려와 사우디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엄격한 비확산 원칙이 중동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⁷⁾

셋째, 중동 안보 재편과 이란 견제의 측면이다. 미국 내 일부 분석은 이번 협정을 이란 전쟁 이후 중동의 세력 균형이 흔들리는 가운데 사우디가 지역 주도권을 재확인하려는 전략의 일부로 해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사우디에 농축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는 이란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우디와 미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미국 원전 산업에 대한 잠재적 수혜이다. 사우디 원전 사업은 원자로 건설뿐 아니라 연료 공급, 유지·보수, 규제 협력, 인력 양성, 핵 안보 및 사이버보안 등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수반한다. 이번 협정은

7) Atlantic Council, "Experts react: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the new U.S.-Saudi nuclear agreement," (July 22, 2026)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가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되게 함으로써 미국 원전 업계의 경제적 수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사우디의 전략적 의도는 ‘Vision 2030’에 따른 에너지 다변화, 핵연료주기 역량 확보를 통한 전략적 잠재력 확대, 그리고 대미 협상력의 제고로 요약될 수 있다. 그간 원자력 발전은 사우디의 석유 의존 경제 탈피를 위한 핵심 산업 전략으로 제시되었으며, 사우디는 우라늄 농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이란 변수와 연결함으로써 장기적 핵 잠재력을 시사해 왔다.

사우디는 그간 농축 옵션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이란 변수와 연계해 농축 허용의 필요성을 부각해 왔다. 더욱이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 프랑스, 한국 등 다양한 대체 협력 선택지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여건은 미국 측이 협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우디의 원전 사업에는 이들 국가의 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이들 공급망으로 기울 경우 시장 기회뿐 아니라 사우디 핵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우디 협정이 미국의 기존 비확산 통제 관행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냉전기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는 민감 핵연료주기 활동을 엄격히 제한했고, 탈냉전기에는 UAE와의 2009년 원자력 협정에서 농축과 재처리 포기를 명시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한 바 있다.⁸⁾ 이런 점에서 이번 사우디 협정은 미국이 오랫동안

8) ‘골드 스탠더드’는 공식 법률 용어라기보다, 상대국이 자국 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높은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가리키는 정책적 표현

유지해 온 비확산 정책 운용을 예외적으로 조정한 사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향후 사우디 협정의 전개는 미 의회의 심사와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 여부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미 의회는 미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라 총 90일의 연속회기일 동안 협정을 검토하며, 제123조 자체의 요건 면제가 없는 일반 협정의 경우 반대 결의가 법률로 확정되지 않는 한 협정은 발효될 수 있다. 다만 의회 내에서는 사우디에 대해 IAEA 추가의정서 수용과 농축·재처리 포기를 요구해 온 목소리가 존재해 왔으며, 관련 상임위원회와 개별 의원들이 협정 이행과 비확산 조치를 계속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한 의회는 과거에도 사우디 관련 원전 수출 지원에 일정한 제약을 둔 바 있어, 향후에도 예산·감독 수단을 통해 압박을 시도할 여지는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대변인은 2026년 7월 23일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협정 추진의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서명 당시의 원래 합의 내용이라기보다 이후 백악관이 추가로 제시한 정치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⁹⁾ 따라서 향후 사우디가 이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협정의 후속 협의와 정치적 부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안보 변수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양측 간 기존 논의에서는 원자력 협정이 대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와 연계되어 거론된 바 있었고, 이번 협정 역시 이란 견제, 사우디의 지역 위상,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와 완전히 분리해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우디의 잠재적 핵역량

9) 이에 대한 근거로는 ABC News의 “wasn’t in the original deal to which the U.S. and Saudis agreed to..”라는 보도 내용과 Atlantic Council의 Daniel Shapiro가 이번 협정이 사우디 이스라엘 정상화와 분리(delinked) 된 채 진행되었다고 평가한 대목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 비확산 비판 여론과 결합할 경우, 협정 추진 과정에 추가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및 정책방향

사우디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대미 원자력 협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번 협정은 한국에 양면적 함의를 갖는다. 사우디 사례는 미국이 전략적 가치, 상업적 이해, 기술 통제, 강화된 검증이 결합될 경우 농축 문제에 대해 예외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우디 협정이 한국의 농축 도입 여건을 즉각적이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행정명령 14299가 만료 예정 123협정들의 적극적 재협상 기초를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미 원자력 협정 논의에서는 오히려 미국에 유리한 의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우디 사례가 선례로 부각되면서 미국 의회와 비확산 진영이 후속 협상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이 단순히 형평성 논리만을 앞세울 경우 의회 검토 과정이나 비확산 논의에서 더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5년 6월 체결된 20년 연장 협정에 기초하고 있고, 행정명령 14299가 향후 10년 내 만료되는 123협정의 재협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역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개정 협의를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사우디 사례가 곧바로 한국의 농축·재처리 협상 여건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의회와 비확산 진영이 후속 협상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사우디 사례는 미국의 농축 정책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에 제한적이거나 협상 공간을 제공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한국의 향후 협상 전략은 사우디

사례를 단순한 선례로 원용하기보다, 한국이 축적해 온 비확산 신뢰성과 동맹 기여도를 토대로 자국 사례의 차별성을 설득력 있게 부각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사우디 시장은 이번 협정으로 인해 한국 원전 산업이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사우디 원자력 협정 체결로 미국 기업의 사우디 원전 시장 접근성이 높아졌고,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면서 한국의 APR1400과 프랑스 EPR 등 기존 경쟁 노형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원전 산업이 APR1400의 글로벌 수출 확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온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산업적 압박이 곧바로 한국의 농축 도입 필요성을 직접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와 핵연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연료 조달 안정성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를 농축 도입의 적극적 명분으로 연결하는 문제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비확산 부담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우디 협정은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 논의의 정치적·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공동 Fact Sheet를 통해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과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에 대한 지지,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연료 조달 협력의 방향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사우디 사례가 곧바로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보장하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 이를 사우디와의 단순한 형평성 논리보다 더 엄격한 비확산 신뢰성과 동맹 기여를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책 방향으로서는 첫째, 비확산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협상 자산으로 전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원자력 법제를 연구개발 진흥과 안전규제 중심의 분절적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 안보·핵 투명성·비확산 준수·평화적 이용 원칙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법 개념의 ‘원자력 기본법’ 제정을 고려하는 한편, 현행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농축·재처리 논의의 법적 근거와 정책 명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수용 농축·재처리 협상은 전면적 권리 주장보다 제한적이고 관리 가능한 단계적 접근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사우디 사례를 단순한 선례로 내세우기보다, 2025년 한미 정상 공동 Fact Sheet에 담긴 관련 문구와 행정명령 14299의 재협상 기초를 협상 환경의 변화로 활용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권한 조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이 과정에서는 우라늄 농축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제한적 허용, 관리 가능한 기술 접근 방식, 한미 공동 사업 또는 공동 연구, 해외 재처리 기술협력 확대 등 중간 단계 대안을 중심으로 협상 패키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농축·재처리를 국가적 위신이나 핵 잠재력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 운영국·수출국으로서의 지속가능성, 핵연료 공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확보의 문제로 정식화하는 데 있다.

셋째, 협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력 인프라를 상설화하고 대미 설득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비확산·원자력 정책 전문가 양성, 비확산·원자력 연구센터 설립, 미국 내 상설 소통·정보 공유 거점 마련, 한미 전문가 전략대화 운영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산업계, 싱크탱크, 비확산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국의 비확산 실적과 제도적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결국 협상의 성패는 한국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비확산 파트너로 인식되느냐에도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원자력 협상은 통상·산업·안보와 분리된 현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와 공급망 협력, 산업 파트너십 확대와 연계한 실리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은 원자력 협상에서 법적 논리뿐 아니라 자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 동맹 차원의 전략적 기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원전·핵연료 공급망 협력을 통해 미국의 산업적 이해와 전략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통상 현안이 안보·원자력 협상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핵추진잠수함 분야는 민수용 농축·재처리 협상과 분리된 별도 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핵잠 논의가 민수용 핵주기 협상과 결합될 경우 전체 협상이 군사화된 인상을 줄 수 있고, 한국의 요구가 핵 잠재력 노력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핵잠 분야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을 통해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금지, 핵물질의 전용 또는 비확산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을 분명히 제도화함으로써¹⁰⁾ 국제사회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은 핵잠 문제에서도 비핵무장 원칙을 강화할수록 협상 정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한국의 대응은 사우디 사례를 단순히 답습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비확산 신뢰성을 국내법과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수용 농축·재처리 협상과 핵추진잠수함 논의를 분리 관리

10) 국방일보,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 (2026.7.30.), p.2

하며, 한미 협력 인프라와 대미 투자·공급망 협력을 결합한 복합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이 높은 비확산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경쟁력, 핵추진잠수함 추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데 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